

1. 개정이유

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법」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(현행 제29조 삭제 및 제30조 개정)

- 1)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
- 2)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안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90조의2제4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”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
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난용승강기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9조(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)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30조(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)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. ~ 라. (생략)</p> <p><u>마.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</u></p> <p><u>바.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</u></p>	<p><u>제30조(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) 영 제90조의2제4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”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1. -----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는 표지를 설치할 것

사. 삭 제

아. (생 략)

2. ~ 4. (생 략)

아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